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‘협의’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20581호, 2024. 12. 20. 공포, 2025. 6. 21.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정원 품질평가단 자격기준 완화, 공립수목원 조성 면적 기준의 예외 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에 관하여 산림청장과 사전협의 시 제출 서류 등 (안 3조의2 신설)

-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, 수목원조성의 기본 구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
- 산림청장은 지정의 필요성, 지정면적·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

나.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절차에 전문가 평가 추가(안 8조의3 개정)

- 국가정원 지정요건의 적합여부를 전문가의 평가로 검증하도록 함

다. 정원 품질평가단 경력기준 및 경력기준 완화(안 8조의5 개정)

- 경력기준을 기술사 10년 → 3년, 기사 및 관련 교사 경력 20년 → 10년, 부교수 → 조교수 등으로 완화
- 자격에 산림기술사기사와 국공립 시험·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 추가

라. 공립수목원 승인기준 중 조성면적 기준의 예외(별표2 개정)

- 사립·학교수목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어 공립수목원이 된 경우 사립·학교수목원의 조성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2ha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2. 15. ~ 3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제3조의3 및 제3조의4로 하고,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협의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시·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.

1.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
2. 수목원조성의 기본구상

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의 필요성, 지정면적·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협의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
③ 산림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

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산림경영기사·임업종묘기사·식물보호기사”를 “산림기사·임업종묘기사·식물보호기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산림산업기사·산림경영산업기사·임업종묘산업기사·식물보호산업기사·조경산업기사·종자산업기사”를 “산림산업기사·임업종묘산업기사·식물보호산업기사·조경산업기사·종자산업기사”로 한다.

제8조의2제1항제8호 본문 중 “애완동물”을 “반려동물”로 한다.

제8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의 적합여부는 전문가 평가로 검증하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8조의5제2항제1호 중 “조경기술사·시설원예기술사”를 “산림기술사·조경기술사·시설원예기술사”로, “10년”을 “3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식물보호기사·조경기사·종자기사”를 “산림기사·식물보호기사·조경기사·종자기사”로, “20년”을 “10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부교수”를 “조교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20년”을 “10년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산림·조경·정원·원예 분야의 국공립 시험·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

6.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
별표 2 제2호의 기준란 중 “국·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르 이상”을 “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르 이상(사립·학교수목원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공립수목원이 된 경우에는 2헥타르 이상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<u>제3조의2(협의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시·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.</u> <u>1.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</u> <u>2. 수목원조성의 기본구상</u> <u>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의 필요성, 지정면적·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협의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</u> <u>③ 산림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</u>		

<u>제3조의2 · 제3조의3</u> (생 략) 제6조(전문관리인의 자격)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<u>산림경영기사 · 임업종묘기사 · 식물보호기사 · 조경기사 · 종자기사</u>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. (생 략)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<u>산림산업기사 · 산림경영산업기사 · 임업종묘산업기사 · 식물보호산업기사 · 조경산업기사 · 종자산업기사</u> 또는 시설원예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. ~ 7. (생 략) 제8조의2(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)	<u>전에 협의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제3조의3 · 제3조의4</u> (현행 제3조의2 및 제3조의3과 같음) 제6조(전문관리인의 자격)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산림기사 · 임업종묘기사 · 식물보호기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산림산업기사 · 임업종묘산업기사 · 식물보호산업기사 · 조경산업기사 · 종자산업기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4. ~ 7. (현행과 같음) 제8조의2(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)
--	---

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 ~ 7. (생략)

8.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

9. (생략)

② (생략)

제8조의3(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) ① ~ ③ (생략)

<신설>

④ (생략)

⑤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정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

① 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반려동물-----
-- . -----

-----.

9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3(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3항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의 적합여부는 전문가 평가로 검증하며,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제5
항-----

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등을
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의5(정원의 품질 및 운영·
관리 평가기준 등) ① (생 략)

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7제1
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
·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는
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
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
해야 한다.

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
조경기술사·시설원예기술사
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
해당 자격분야에서 10년 이상
종사한 사람

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
식물보호기사·조경기사·종
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
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
해당 자격분야에서 20년 이상
종사한 사람
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
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·식
물학·생태학·원예학 또는

-----.

제8조의5(정원의 품질 및 운영·
관리 평가기준 등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
산림기술사·조경기술사·시
설원예기술사-----
----- 3년 -----

2. -----
산림기사·식물보호기사·조
경기사·종자기사 -----

----- 10년 -----

3. -----

조경학을 지도하는 <u>부교수</u> 이상인 사람	----- <u>조교수</u> -----
4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, 원예 또는 조경을 지도하는 교사로 <u>20년</u> 이상 종사한 사람	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년</u> ----- -----
<u><신 설></u>	5. <u>산림·조경·정원·원예 분야의 국공립 시험·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</u>
<u><신 설></u>	6. <u>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람</u>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248